

한국과 일본의 노인가구 주택개조 관련 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olicie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of Korea and Japan

박남희*
Park, Nam-Hee

권오정**
Kwon, Oh-Jung

최령***
Choi, Ryung

신혜인****
Shin, Hye-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of Korea and Japan. Documentary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not enough that the housing policy of elderly households prepare institutions and standards for aging society in Korea. 2) Residential remodeling projects by this time were not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of elderly households but to support only a few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in Korea. 3) Housing policy of elderly households consisted of design and remodeling standards for barrierfree of new housing and housing stock, housing financing, human resource network, and educational program of housing remodeling in Japan. 4)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have support system which is systematic and that is helpful to those elderly households who needs housing remodeling in Japan. 5) It is needed that local self-governing body frame a policy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prepare the policy of financial support and content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level of housing quality and residents circumstances. And they have the education system for specialist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nd clarify the standard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6) In-depth analysis study is need to find a suggestion in many cases of advanced nations.

Keywords : elderly household, residential remodeling, housing policy

주요어 : 노인가구, 주택개조, 주택정책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퇴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므로 생활하기에 편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등의 환경지원을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연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주택개조는 일상생활동작 저하에 따른 노인의 좌절감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생활에 기여하고,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목욕서비스나 이동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재가복지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시설 입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사회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한국주거학회, 2005).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개조기준, 개조비용 지원제도 및 이를 위한

각종 운영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다(한국주거학회, 2005).

본 연구에서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주거가 갖는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노인주거와 관련된 국내정책과 우리보다 앞서 노령화를 겪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는 일본의 노인주택 정책 중 특히 주택개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국내정책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노인주거 관련 제도와 주택개조 제도를 조사한다. 둘째, 일본의 노인주거 관련 제도와 주택개조 제도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주택개조라 함은 노인 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수월하도록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 주택에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개조에는 일반적 개조와 주거조절이 포함되는데 일반적 개조에는 주택의 증·개축이나 구조 변경, 마감재 교체나 보조기구나 설비의 설치가 포함되고 주거조절에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용도의 복지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정회원(주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겸임교수, 이학박사

**정회원,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강사, 학술박사

****정회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거환경과 주택개조에 관한 문헌과 인터넷자료를 도서관서베이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이다.

II. 한 국

1. 노인주거 관련 제도

노인의 주거 관련 제도를 연대별로 보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까지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후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노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유형이 무료, 실비, 유료시설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의 원칙도 확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료시설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노인주택에서 양극화가 초래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중산층 노인에 대한 주거대책은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노인 관련 다양한 정책이 범정부 차원으로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한주택공사, 2006).

국내의 노인주택을 위한 법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 8조(노인전용주거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노인복지법 제 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 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 내용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밖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정도이다. 한편 국내의 주택 관련 주요 법률인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에는 노인주거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노인의 주거복지와 관련되어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지원금 또는 주택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임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현물급여 제공 정도로 소수의 빈곤노인을 포함한 주거지원이 존재하긴 하나 이 역시 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주거정책은 노인과 그 보호가족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노인 개인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에 상당히 미흡하다(지은영, 2003).

건설교통부가 2004년 3월에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사회, 가구구성 변화에 대응한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노인을 배려한 설계를 한다고 하였다. 즉 복지·의료시설과 연계한 노인주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며, 노인주택 설계기준을 정

비하고, 무장애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주거 편의를 위한 개보수비용 지원방안으로서 국민주택자금의 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에 노인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4).

2. 주택개조 관련 제도

국내에서 2004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택개조사업으로는 ‘집수리 사업’(보건복지부), ‘사랑의 집 고쳐주기’(행정자치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경기도)등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1조(주거급여)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주거 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집수리 사업의 내용은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건축물 보강공사(지붕, 벽, 천장, 담장, 도배 등)와 난방(보일러, 아궁이), 급배수 시설, 화장실 개조, 전기 작업, 칠, 화단 정리,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집수리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인구 비율이 36.4%임을 감안할 때 노인 가구도 이 사업의 일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극빈층에 한정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에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0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상 가구를 전년도보다 2만 가구 늘려 5만 가구로 확대하였다.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가구 등에 지원되는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로서 2003년 현재 총 410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르면 가구당 수리 비용은 가족수에 비례하나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다. 실제 수리비용이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이웃돕기성금 및 자기부담으로 추가공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상환액을 초과하여 추진 가능하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는 현물급여 위탁예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역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 프로그램으로 비용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7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주거학회, 2005). 경기도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지원 대상이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가구, 경로당 등 범위가 넓기는 하나 지원 비용이 평균 400-500만원으로 상

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조사업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기에는 미흡하다(한국주거학회, 2005).

이밖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펼쳐온 파라다이스 복지재단과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를 실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주택개조 및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신문사와 종합사회복지관, 자치단체, 사회단체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주)파라다이스 건설사업과 협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 감리,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집수리(보일러 교체, 방수, 지붕수리 등)와 도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조 경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관은 월 1-2회에 걸쳐 유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개조의 범위가 한정적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을 노인가구로만 한정된 지원도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노인·장애인 시설을 제공하기로 발표하였다. 즉,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분양 계약 때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욕실 바닥의 단차 없애기, 욕실 미끄럼 방지타일, 욕실 출입문 규격 확대, 욕실 출입문 개폐 방향 변경(안여단이→밖여단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등 10가지는 무료로, 좌식싱크대는 원가로 입주 전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욕실에 한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

다(한국주거학회,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택개조사업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의 개조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단지 극빈층의 소수 노인가구만이 혜택 대상이 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I. 일 본

일본의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택 정책은 건설성(현 국토교통성)과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책들은 모든 주택을 무장애화하여 고령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신축은 물론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주택을 어떻게 무장애화 할 것인가 하는 설계 및 개조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조하는 관련 금융 제도, 이 제도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인적 자원에 관한 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설성과 후생성의 노인가구 주택개조정책을 정리하였다.

먼저 건설성과 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택 정책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주택정책은 크게 주택개조의 상담·조언, 무장애화의 보급 추진, 무장애 주택의 공급, 입주 지원, 그리고 무장애화 지원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주택개조의 상담·조언은 개조 관련 정책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장애화의 보급 추진에는 개조 관련 설계 매뉴얼, 무장애화 지원에는 개조 및 금융 관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개조 관련 정책들은 <그림 1>과 같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제도를 실제로 개조가 필요한 고령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주택

표 1. 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주택정책 및 제도

내용	후생노동성 관련 정책	건설성 관련 정책	양성 공동 관련 정책
주택개조 상담 및 조언	·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 · 리폼(주택개량) 헬퍼 파견 · 재택개호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 · 일상생활용구대여사업(손잡이, 경사로 등)	· 중개측 상담원제도 운영 · 맨션리폼 매니저 제도 운영	· 시·구·동별주택·복지창구설치 운영
무장애화 보급추진	· 고령자주택 중개측상담 매뉴얼 발행 · 연금 무장애주택설계 매뉴얼 발행	· 장수사회대용 주택설계지침 책정 · 장수사회대용 주택설계매뉴얼 발행 · 고령화대용 주택리폼 매뉴얼 발행	
무장애주택 공급	· 케어하우스 정비 · 유료노인홈의 건전육성	· 지역 고령자주택계획의 제정 ·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정비계획 추진 · 신축공공주택의 장수사회대용 사양제시 · 기존 공영·공단임대주택을 노인용으로 개선 · 특정목적 借上 공공임대주택 · 노인주택의 건설	· 실버하우징프로젝트
입주우대		· 노인·장애자세대의 공영주택 입주우대 · 노인세대의 공단주택 입주우대	
무장애화 지원	· 노인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 · 생활복지용자(주택분) 대부제도 · 연금 무장애 주택용자 (연금복지사업단)	· 주택개량자금대부 · 장수주거만들기 모델 사업 · 장수사회대용주택에 대한 금리우대 · 장수사회대용주택에 대한 할증용자 · 노인대용 설비설치공사에 대한 할증용자	

자료: 財團法人高嶺者住宅財團 `人にやさしい建築・住宅推進協議會 (1998), 高嶺社會の住まいと福祉データベー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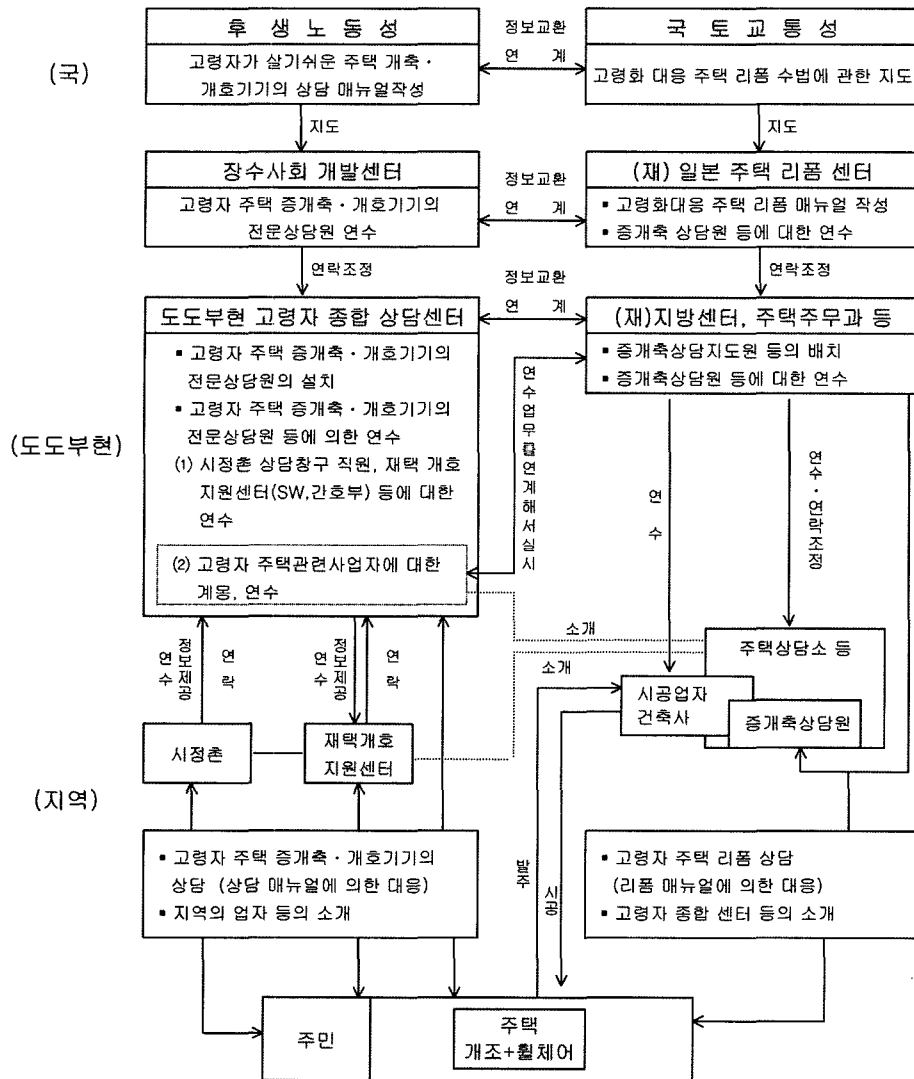


그림 1. 고령자 주택 증개축·개호기기 상담체계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후생성의 개호(介護)보험을 이용해서 간단한 개조를 실시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조성제도를 통해 보조받을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건설성 관련 정책인 고령 거주 지원센터(고령자주택재단)의 보증을 얻어 주택금융공사의 변제특례제도를 활용한 무장애화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 과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성능표시제도’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등급’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기본 성능을 체크할 수 있다.

1. 건설성의 노인주택 정책(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torikumi_tori04.html)

(1)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torikumi/torikumi.html#houkaisei>)

고령자 거주법은 고령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고 민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존 주택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면서 양호한 거주환경을 가진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를 입주시키고 있는 임대주택의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이자 목적이다. 이 정책은 복지 정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고자 한다.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보건 의료·복지 행정과 협력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재택에서의 케어 가능성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의 4가지 목표는 민간 활력을 이용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고령자가 원활하게 입주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시장의 정비, 주택의 무장애화의 추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의 책정이다.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모든 주택 재고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특히 주택 무장애화 관련 지침은 이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령자 주택재단(고령자 거주 지원센터) (<http://www.koujuuzai.or.jp/index.html>)

고령자 주택재단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

물에 의해서 고령자 거주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다. 재단법인 고령자 주택재단은 1993년 3월 설립된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한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이다. 이 재단은 고령 사회에 대응한 주택·생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지방 공공 단체의 고령자용 주택의 사업화 지원, 생활 관련 서비스 시스템을 가진 고령자용 공적 주택의 관리 운영, 고령자의 집세 채무 보증, 주택 개량 자금 대부 등에 관계되는 채무의 보증을 행하며, 고령 사회에 대응한 주택·생활 관련 서비스 등의 정비 추진 및 고령자 거주 안정의 확보를 지원하여 국민의 주생활 안정, 향상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 업무는 첫째, 고령자가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집세 채무 보증, 둘째, 고령자용 변제 특례 제도(무장애-리폼)에 근거하는 용자의 채무 보증, 셋째,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제공, 넷째,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다.

(3) 주택금융공사의 장수사회 대응 주택공사(개조) (<http://www.jyukou.go.jp/>)

주택금융공사는 전액 정부 출자의 공고(公庫)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건설·개조에 관한 용자가 주요 업무의 하나이다. 무장애 및 고령자 관련 정책과 관련 있는 용자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준 금리가 적용되는 무장애공사가 있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용자액과 금리가 우대되는 정책유도형 개조인 무장애주택공사가 있다. 무장애 주택공사는 고령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장수사회 대응 주택공사」, 즉 「무장애 주택공사」 또는 「고령자 대응 설비 설치공사」의 어느 한쪽을 행할 때, 무장애 주택 관련 용자를 한다. 단차의 해소나 손잡이의 설치, 고령자나 신체장애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장수사회 대응 주택공사」에 의해 사람에게 생활하기 쉬운 배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 전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단 고령자변제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주택재단의 보증이 필요하다.

(4)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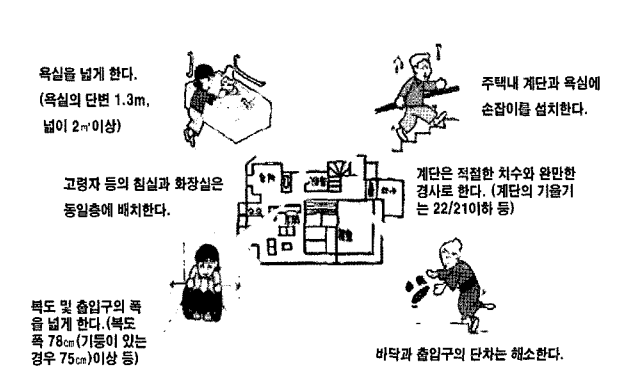


그림 2. 무장애 주택공사의 이미지
(출처: <http://www.jyukou.go.jp/yusi/koukojutaku/images/zu8.gif>)

능표시제도(<http://www.hyouka.gr.jp/index.html>)

노인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아 온 정든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주택도 노년기의 생활을 고려하여 단차 해소, 손잡이 설치, 출입구나 통로 폭의 확장 등과 같은 개조에 의하여 무장애화를 진척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무장애화된 주택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유아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이 이동하기에 편안한 주택이다. 이와 같이 무장애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생활 장소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능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장애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일명 품확법)에 의한 주택성능표시 제도이다. 주택성능 평가기관 등의 연락 협의회 「평가협」은 이 제도를 평가하고 있는 지정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의 연락 조정이나 정보 교환 등을 행하고, 주택성능표시 제도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상설의 분과회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 주택 성능은 지진, 화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배려 대책 등급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택에 대해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에 관해서는 주택 성능 표시 제도로 「고령자에 대한 배려 대책 등급」이라는 평가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신축과 기존의 주택을 불문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5) (재)주택 개조·분쟁 처리 지원 센터(<http://www.chord.or.jp/>)

(재)주택 개조 센터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개조를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리폼 인프라)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개조에 관련된 인체 육성과 조사연구,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이다.

‘주택 무장애화 정보제공시스템(www.refonet.jp/bfree/)’을 통해 주택 무장애화에 관한 기존 개조 사례를 중심으로 지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거를 무장애화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 상황이나 생활의 방법과 현재의 주거 상황 모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활 거점,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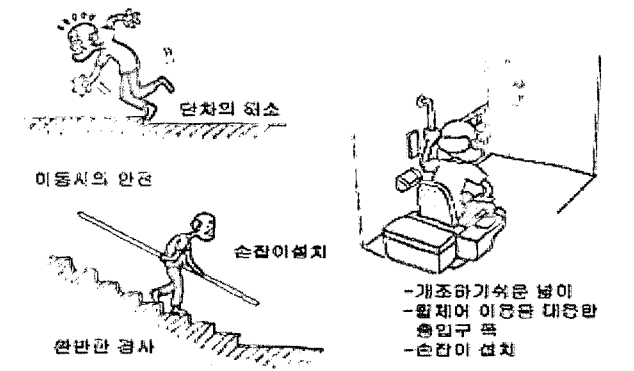


그림 3. 개조에 의한 주택의 무장애화 사례
(출처: http://www.hyouka.gr.jp/seido/kizon/img/kizon_26.gif)

개선, 장소별 사례 검색,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 사례를 통한 입체화된 접근 방식으로 주택의 적절한 무장애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개조 매뉴얼을 통해서서는 다양한 대상자나 대상주택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 개조 매뉴얼을 대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후생성 노인주택 정책 - 개호보험(<http://www.mhlw.go.jp/topics/kaigo/index.html>)

일본의 개호보험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급여와 본인 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개호보험의 보험자(운영 주체)는 기초자치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하되 국가, 시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에서 64세까지의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이원화된 이유는 보험 지급의 대상이 되는 요개호 상태의 범위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1호 피보험자는 요개호 상태가 되면 무조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생기지만,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노인 초기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가 원인이 되는 15 종류의 특정 질환에 의한 요개호 및 요지원 상태에 국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별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살펴보면 제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별로 소득에 따라 5단계별 정액보험료가 설정된다. 보험료 징수는 노령 및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며, 나머지는 시·정·촌이 개별로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호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금’으로 모아 개별 시·정·촌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도록 각 시·정·촌에 교부하게 된다. 한편,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 지원 45%(중앙 22.5%, 지방 22.5%) 등으로 조달된다.

개호 보험에서는 거택 서비스 중 “주택 개조비 지급”과 “복지 용구 대여 및 거택 개호(지원)복지 용구 구입비의 지급”이라고 하는 2종류의 주택에 관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택개조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였다.

(1) 개호보험 대상이 되는 개조

① 손잡이의 부착

복도, 계단, 화장실, 욕실, 현관, 현관에서 도로까지의 도로 등에 전도(轉倒) 예방·이동 또는 이송(移乘) 동작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② 단차의 해소

복도, 계단, 화장실, 욕실, 현관 등 각 공간의 바닥 단차(문지방 등)나 현관에서 도로까지의 도로 등의 단차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단차 해소를 위한 슬로프의 설치, 문지방을 낮게 하는 공사, 욕실 바닥의 높이기 등이 해당된다(승강기, 리프트, 단차해소기 등 동력에 의하여 단차를 해소하는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

③ 바닥재·통로면 재료의 변경

미끄럼을 방지하고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바닥이나 통로면의 재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거실에 있어서는 다다미나 카페트를 나무 바닥재나 비닐계 바닥재 등으로 변경, 욕실에 있어서는 바닥재를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변경, 욕외 통로면에 있어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포장재료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④ 미닫이문 등으로의 문 교체

여닫이문을 미닫이·접이문·아코디언커튼 등으로 교환하는 등 문 전체를 교체하거나 문손잡이를 바꾸는 것이 해당된다(자동문으로 한 경우 자동문의 동력 부분 설치 대상외이다. 동력 사용에 관한 공사 부분은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보험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양식변기 등으로의 변기 교체

좌변기를 양식 변기(난방 시트·세정 기능이 부가된 것도 가능하다)로 교환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미 양식 변기인 경우, 난방 시트나 세정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수세식 좌식 변기에서 수세식 양식 변기로 교환한 경우는 수세화에 관한 부분의 공사 부분은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보험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⑥ 기타

손잡이 설치로 손잡이 설치에 따르는 벽의 바탕을 보강하는 것, 단차의 해소로 욕실의 바닥 단차 해소(욕실 바닥 높이기)에 수반하는 급배수설비공사, 바닥재·통로면 재료의 변경으로 바닥재의 변경에 수반하는 바탕의 보수나 장선의 보강과 통로면의 재료 변경에 수반하는 바닥 정비, 미닫이문 등으로의 문 교체로 문 교체에 수반하는 벽 또는 기둥의 개조 공사, 양식변기 등으로의 변기 교체로 변기 교체에 수반하는 급배수 설비 공사와 변기 교체에 수반하는 바닥재의 변경 등이다.

(2) 주택 개조비

① 지급액

주택 개조비의 지급 한도액은 20만엔이다. 지급 한도액은 요지원·요개호 노인의 일생에 걸쳐 한 주택에서 받는 상한액이 소비세 포함하여 20만엔이다. 그 중 1할은 자기 부담이고 18만엔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 자기 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 조건으로 요개호 상태가 현저하고 병이 깊어지는 경우와 이사한 경우에는 다시 지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② 지급방식

지급은 상환지불방식으로 피보험자가 공사업자에게 비용을 전액 지불한 뒤 시·동·면에 신청을 하고 개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의 9할이 지급된다. 20만엔의 사용 방법은 한 번의 개조에 전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은 노인의 신체적 또는 주택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첫째, 요개호 상태가 현저히 심각해지는 경우이다. 추가로 주택 개조를 행할 때, 처음으로 주택 개조를 착공한 날과 비교하고 요개호 상태 구분이 3단계 이상 오르는 경우는 그때까지의 지급액에 관계없이 다시 지급 한도액까지의 개조를 행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다(단 그때까지의 잔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예외의 적용은 1인 1회로 제한한다. 한번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으면 요개호 상태가 재차 3 단계 이상 올라도 다시 적용되지 않으며 “이사한 경우에 의한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이사한 경우이다.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 전의 지급액에 관계없이 다시 이사 후의 주택에 있어서 지급 한도액까지의 개조를 행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다(단 그때까지의 잔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 후의 주택에 있어서 “요개호 상태가 현저하게 심각해지는 경우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주택 개조 착공일=이사 후의 주택에서 처음 개조 착공일』이 된다. 이 예외의 적용을 받은 뒤, 이사 전의 주택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있어서 “요개호 상태가 현저하게 심각해지는 경우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처음 주택 개조 착공일=이사 전의 주택에서 처음 개조 착공일』이 된다.

③ 신청 방법

주택 개조비 신청은 살고 있는 시·동·면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에 제

출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독거노인처럼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호 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에게 신청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3. 각 지자체에 의한 개호 개조에 관한 조성금 제도(도쿄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는 간병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고령자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을 조성하는 것이다. 각 시·정·촌에 따라 실시 여부는 물론 그 내용도 다르다. 여기서는 도쿄도의 주택 무장애화를 위한 주택 개조비용 조성 사업(일명 고령자 활기차게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도쿄도에 있어서 고령자의 주택 개조비의 조성은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어 왔지만 2000년 4월부터 시작된 개호보험 제도 안에서 주택 개조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개호보험 제도와 조정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2000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1) 제도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고령자는 주택내의 전도 사고 등에 의하여 누워만 있게 되는 요개호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누워만 지내거나 불안정함을 보이는 정도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무장애화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요개호자의 발생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1999년 12월에 도쿄도가 실시한 주택 개조에 관한 조사 검토 결과 자립 가능한 고령자에 대한 개조 효과는 자립 기간의 연장, 자립 고령자의 증대, 개호비용의 경감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개조는 원칙적으로 개호 보험의 대

표 2. 개호보험 거택 개호(지원)주택 개조 지급 사업과 도쿄도 고령자 주택 개조 비용 조성 사업의 비교

		개호 보험	도쿄도 고령자 주택 개조 비용 조성 사업	
		거택개호(지원)주택 개조 지급 사업	주택 개조의 예방 지급	주택 설비 개조 지급
대상자	개호도	· 요지원~요개호의 범위 · 65세 이상의 고령자 · 40세부터 64세까지는 15종류의 특정 질병에 해당하는 사람	· 자립(허약)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개호 보험 비해당자	(1) 자립(허약)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개호 보험 비해당자 (2) 요지원~요개호의 범위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득기준=본인부담비율	· 소득 기준 없음 · 본인 부담 1할	· 소득 기준 없음 · 본인 부담 원칙 1할	· 소득 기준 없음 · 본인 부담 원칙 1할
지급내용	대상 공사 범위	· 손잡이 (핸드레일) 설치 · 단차의 해소 · 미끄럼의 방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바닥재 변경 · 미닫이 등으로의 문 교체 · 양식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 그 밖에 공사에 수반하여 필요한 공사(욕조, 급탕 설비, 싱크대·세면대의 교체 등, 소위 설비는 대상 외)	개호보험과 동일	· 욕조의 교체 및 이에 수반해 필요한 급탕 설비 등의 공사 · 싱크대, 세면대 교체 및 이에 수반해 필요한 급탕 설비 등의 공사 · 변기의 양식화 및 이에 수반해 필요한 공사
	금액	· 개호보험 단가 200,000엔 · 요개호 상태가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나 이사한 경우는 제이용할 수 있다.	개호보험과 동일액 1세대당 200,000엔	· 욕조 개조 등 1세대당 379,000엔 · 싱크대, 세면대 1세대당 156,000엔 · 변기의 양식화 1세대당 106,000엔
비고			상기 도쿄도의 제도 운용은 구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지급 내용은 각 구시의 사업 개요를 참조할 것	

자료: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ourei/barrier/kaigo1.htm>

상이 아니지만 도쿄도의 종래의 조성 사업에서는 ‘옥조 등의 설비에 해당’하는 개조 희망이나 개조 실적이 많아 설비 개조비 지급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 제도의 개요

이 제도는 고령자가 있는 세대에게 주택의 개조비를 지급하여 좀 더 양질의 주거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제도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전도 예방, 동작의 용이성 확보(통증의 경감), 행동 범위의 확대 가능성 확보, 개호의 경감, 그 밖에 시·구·읍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이다.

(3) 제도의 실시 주체

이 제도의 실시 주체는 구·시·동면이다. 본 사업은 2002년도 고령자 주택 개조비용 조성사업(도쿄도 포괄 보조 사업)으로 평가하게 되고, 구·시·동면의 선택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주택 개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손잡이(핸드레일) 설치, 단차의 해소, 미끄러짐 방지, 이동의 원활화 등을 위한 바닥재의 변경, 미닫이문 교환, 서양식 화장실 등으로의 변기 교환, 그 밖에 이러한 공사에 부가되는 필요한 공사 등이다. 둘째, 주택 설비 개조를 위한 지원으로 싱크대, 세면대의 교체 및 이것에 덧붙여 필요한 급탕 설비 공사, 변기의 양식화 및 이것에 덧붙여 필요한 공사 등이다.

(4) 보조 한도액(보조율 도쿄도 1/2, 구·시·동면 1/2)
보조 한도액은 예방을 위한 지원의 경우는 1 세대당 20만엔, 주택 설비 개조 지급에서 옥조의 교체 등 1건당 37만9천엔, 싱크대, 세면대의 교체 등 1건당 15만6천엔, 변기의 양식화 등 1건당 10만6천엔 등이다.

(5) 대상자

이 제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주택 개조 예방 지급에 관해서는 개호보험제도의 비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설비 개조 지급에 관해서는 요양 간호와 자립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또한 분명히 자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구·시·동·면의 판단으로 요양 간호 인정을 생략할 수 있다.

(6) 지급 관련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이다. 지급 내용은 구·시·동·면에서 결정된다. 지급 내용은 주택개조 어드바이저와 같이 주택 개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개조 계획을 구·시·동·면이 결정한다.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 그 비용의 10%를 부담한다. 단 구·시·동·면이 부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제한을 설치하는 것 및 부담 비용의 감액 혹은 면제를 할 수가 있다. 주의할 점은 종목, 대상자, 기준 단가, 절차의 방법에 관해서는 구시동

표 3. 도쿄도내 각 구시동면별 고령자 주택개조 실시 상황 (예제)

No.	지자체 이름	주택 개조 전문가 소개	시공 후의 공사 내용 등의 확인방법	주택 개조 어드바이저의 설치	주택 개조 비용의 대부 사업 실시
1	千代田	하고 있다	케이스워커가 사전 견적하고도면을 기초로 현장에서의 완료 확인	하고 있지 않다	있다(응급자금 안에서 실시) 27만엔(세대(무이자))
2	中央	하고 있다	완료 서류, 사진 및 케이스워커에 의한 확인	있다(건축사)	하고 있지 않다
3	港	하고 있지 않다	구의 직원이 실시	하고 있지 않다	미 회답
4	新宿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사 전후의 사진	있다(건축사)	하고 있지 않다
5	文京	하고 있지 않다(단, 재택 개호 지원 센터에서 필요에 따라 조회한다)	재택 개호 지원 센터 또는, 담당이 방문하고 확인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6	立川市	하고 있다(건축사:창구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주택 개조 어드바이저 사업을 소개. 시공 업자:창구 등으로 사업자의 상담을 받는 경우, 시장에 등록된 업자 일람으로 정보 제공을 행하고 있다.)	시직원이 대상자 주택을 방문해, 신청시에 제출되는 견적서·공사 계획서를 기초로 내용 확인을 행하고 있다	있다(건축)	하고 있지 않다(개호 보험의 주택 개조나 자립 지원 주택 개조 지급 사업에 관한 대부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65세 이상으로 고령자의 특성에 배려한 개축·개량하는 경우의 대부 제도立川市 고령자 주거 개량 자금 대부 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7	武野市	하고 있다(시공 업자)	보조 기구 센터의 주택 개조 어드바이저 또는 재택 개호 지원 센터 직원의 방문 조사	있다(복지)	하고 있지 않다
8	三鷹市	하고 있지 않다	공사 완료 서류(시공 전후의 사진 첨부)에 의해 완료 확인	있다(복지)	하고 있지 않다
9	三鷹市	하고 있지 않다	시직원(또는 재택 개호 지원 센터 직원)에 의한 방문 조사 확인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기타(사회복지협의회로의 대부사업. 150만엔까지 연리 3%로)
10	府中市	하고 있지 않다	담당자(시직원)이 현지 확인을 한다	있다(건축)	하고 있지 않다

자료 :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ourei/barrier/ichiran.htm>

표 4. 각 구시동면별 사업 개요 - 도쿄도 千代田 사례

사업명: 千代田 고령자 자립 지원 주택 개조 지급 사업		창구:고령자 복지와 상담계		
분류	구성 대상자	구성 방법	구성 기준액	부담율
주택 개조 예방 지급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일상생활동작에 곤란이 있고, 재택에서의 생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상담 2. 조성의 신청 3. 방문 조사 4. 지급 조성의 결정 5. 개조 공사 6. 개조 공사의 확인 7. 이용자와 각각의 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지불	개호 보험과 동종목 · 손잡이 설치 · 단차 해소 · 바닥재 변경 · 미닫이문으로 문 변경 · 변기 교환 · 그 밖에 부대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이외 10% 생활보호 수급자는 부담 없음 계단 승강기 설치 [보험료 구분] · 제1,2 단계 10% · 제3,4 단계 20% · 제5,6 단계 30% 생활보호 수급자는 부담 없음
주택 설비 개조 지급			자립(허약)요지원·요개호 이상	

자료 :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ourei/barrier/tokul.htm#chiyo>

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시·동·면의 접수 창구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

4. 주택개조상담

<표 5> 한국과 일본의 주택개조 지원 정책 특성국가 주요 지원대상지원방법특징한국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국민주택기금 중 약간의 주거현물(현금) 급여주요 국민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소규모 개조 관련 프로그램 일부 실시일본고령자주택개조비 및 리폼론(융자금) 지원지방정부 및 정부산하 비영리단체 중심의 다양한 개조관련 프로그램 실시일본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산하의 비영리단체는 이와 관련된 상담 접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후생성에서는 재택개호지원센터, 개호실습보급센터, 고령자종합상담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택개량상담봉사원을 파견하여 주택개조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으며 건설성에서는 증개축 상담원제도를 두고 있는 등 각 시·정·촌에 주택·복지창구를 마련하여 주택개조에 관한 상담과 조언, 시공자 소개,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정, 시공 후의 평가, 이용대상자에 대한 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들 역시 고령자의 주택 증개축 상담에 관한 매뉴얼을 발행하는 등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은 전문적인 주택개조 실시를 위하여 주택리폼센터, 복지주환경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표 5. 한국과 일본의 주택개조 지원 정책 특성

국가	주요 지원대상	지원방법	특징
한국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	국민주택기금 중 약간의 주거현물(현금) 급여	주요 국민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소규모 개조관련 프로그램 일부 실시
일본	고령자	주택개조비 및 리폼론(융자금) 지원	지방정부 및 정부산하 비영리단체 중심의 다양한 개조관련 프로그램 실시

IV.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택개조 정책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한 법률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편의증진법)에 노인주거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부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시도해 온 일본은 ‘고령자 및 신체장애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1994),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을 적용한 건설성의 ‘장수사회 대응 주택설계지침’(1996), ‘주택의 품질확보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0) 등 구체적인 개조기준을 정비해왔다. 특히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과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노인은 주택개조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개조기준 역시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향후 국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정책 시행의 중심이 되고 기타 비영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역별로 노인인구 및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개조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거주자 상황(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에 따라서 비용 지원과 내용을 차등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주택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 구축을 통해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시 노인에게 개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공사 감독, 사후 평가 작업 등에 이러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직원

이 필요하고 주택개조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가칭 주택개조상담사가 요구된다. 넷째,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개조 시행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개조기준은 2005년 12월에 공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노인주택 관련법 개정, 노인주택개조 관련 매뉴얼 개발, 개조 관련 산업 지원, 개조 전문업체 양성, 노인소비자 교육, 노인주택개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 관련 주택정책과 주택개조 정책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노인주거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노인주거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 한국의 노인주거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 및 기준을 보완하고 있지만 노인 개인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둘째, 국내 노인주거와 관련된 주택개조 제도를 보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기도, 복지재단 등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했고 주택개조사업의 대부분은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단지 극빈층의 소수 노인가구만이 혜택 대상이 되어 왔다.

셋째, 일본의 노인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모든 주택을 무장애화하여 고령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주택을 어떻게 무장애화 할 것인가 하는 설계 및 개조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금융 제도와 인적 자원 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노인주거와 관련된 주택개조 제도는 개조가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으로 일정 한도 범위에서 원하는 개조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체계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성에서는 법적 제도나 기관을 통해 노인주택개조를 지원하고 후생성에서는 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고령자의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개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주택개조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정책 시행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주택 개조시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거주자 상황에 따라서 비용 지원과 개조 내용을 차별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며, 노인주택개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갖추고 법적인 개조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노인주택

개조 부분에 대하여 일본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2004). 주택종합계획.
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제57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3. 대한주택공사(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5.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지은영(2003).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노인주거서비스 개발방향 -수요자와 전달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8. 한국주거학회(2005). 노인가구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 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9. 馬場昌子/福祉醫療建築の連携による住居改善研究會著(2001). 高齢者・障害者のための住居改善, 株式會社 學芸出版社.
10. 野村 歡・橋本美芽(2003). 住環境のバリアフリー-デザインブック, 彰國社.
11. 高齢者主環境研究所・バリアフリー-デザイン(2003). 바리아프리 - 住宅讀本, 三和書籍.
12. 國土交通省住宅局住宅總合整備課(2005). 高齢者が居住する住宅の設計 マニュアル, pp.296, 株式會社 ぎょうせい.
13. 財團法人高齢者住宅財團 `人にやさしい建築・住宅推進協議會 (1998). 高齢社會の住まいと福祉データブック, pp.219, 財團法人 高齢者住宅財團.
14. 野村 歡・橋本美芽(2003). 住環境のバリアフリー-デザインブック-福祉用具・機器の選擇から住まいの新築・改修の手法まで, pp.169, 彰國社.
15. 馬場昌子/福祉醫療建築の連携による住居改善研究會著(2001). 福祉醫療建築の連携による高齢者・障害者のための住居改善, pp.157, 學芸出版社.
<http://www.moct.go.kr>
<http://www.mohw.go.kr>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torikumi/torikumi.html>
<http://www.koujuuzai.or.jp/>
<http://www.chord.or.jp/>
<http://www.jyukou.go.jp/>
<http://www.kaigofureai.jp/kaigohoken/teikyouservice.html>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ourei/barrier/k_gaiyo.htm#ikiiki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torikumi/sisin01.htm>
<http://www.techno-aids.or.jp/index.shtml>
<http://www.mhlw.go.jp/topics/kaigo/index.html>
<http://www.hyouka.gr.jp/index.html>

(接受: 2006. 8. 18)